

제412회 임시회  
'23. 10. 17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사유

-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,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관련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(IQ)가 71~84의 범주에 속하며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 적응 등 일상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으며 지능지수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약 13.6%인 약 699만 명(2023년 5월 기준)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임<sup>1)</sup>.
- 경계선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 발견하여 특성에 맞는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면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‘장애’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, 조기 진단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,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미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 -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목적, 정의,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

---

1)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(이슈와 논점 제2109호, 국회입법조사처, 2023.6.29.)

계획의 수립·시행,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,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,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안 제2조는 ‘경계선지능인’ 과 ‘경계선지능인 지원’ 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.

-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상위법령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고 학계 및 연구에서도 ‘경계선 지적 기능성 학습자’, ‘경계선급 지능 아동’, ‘느린학습자’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음.
-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지적장애인 보다는 높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,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특정하는 합의된 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므로 향후 안 제6조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‘경계선지능인 지원’ 과 관련하여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원범위가 광범위 하기는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진단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,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에 규정된 지원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○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
-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짐.
-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를 토대로 추정할 뿐 명확한 통계가 없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.
  - 실태조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필수절차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에 규정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지원,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은 행정영역에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.
  - 안 제8조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의 ‘경계선지능인 지원’에 규정된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등은 행정영역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료, 교육,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이 필요함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인구 약 13.6%를 차지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제도적 지원 밖에서 방치될 경우 개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가중, 각종 범죄 노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.
- 본 조례 제정은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